

발간등록번호

11-1280000-000401-01

# 형사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안내

2024. 12.



검찰  
PROSECUTION SERVICE



사단  
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목 차

<b>연구배경</b>	<b>1</b>	
<b>1단계</b>	<b>경찰 수사단계</b>	<b>5</b>
	1-1①단계 경찰서 출석요구 및 임의동행	6
	1-1②단계 체포와 유치장 수감	11
	1-2단계 경찰 조사	18
	1-3단계 구속전 피의자심문과 구속적부심사	25
<b>2단계</b>	<b>검찰 수사단계</b>	<b>31</b>
	2-1단계 형사조정제도	32
	2-2단계 검찰청 출석요구	35
	2-3단계 검찰 조사	37
	2-4단계 과학수사	44
	2-5단계 검사 결정	47
<b>3단계</b>	<b>재판단계</b>	<b>51</b>
	3-1①단계 약식재판	52
	3-1②단계 정식재판-재판 받기 전	54
	3-1②단계 정식재판-재판 진행 중	57
	3-2단계 판결선고	63

**4단계**    **형집행단계**    **69**

- 4-1단계 교정·구금시설 이용 ..... 70
- 4-2단계 치료감호시설 이용(보안처분) ..... 74

**참고문헌**    **79**

**부록**    **81**

- 법률용어의 알기 쉬운 설명 ..... 82
  - 피해자보호·지원제도 ..... 84
  - 의사소통 지원 그림판 ..... 90
-

# 일러두기

## ■ 본 안내서는 형사사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가족, 후견인, 사회복지종사자 등 평소 발달장애인을 잘 알고 있는 조력자에게는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 경찰, 검사, 판사 등 관계자에게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형사사법절차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안내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에게는 알기 쉬운 그림과 글을 통해 형사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마다 이해능력이 다르므로 조력자의 설명이 동반되길 바랍니다.

## ■ 본 안내서는 피의자·피고인 중심의 형사사법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경찰 수사, 검찰 수사, 재판, 형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고려하고, 발달장애인 피의자, 피고인에게 보장해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방안은 별도의 연구가 요구될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부록으로 “피해자 형사지원제도”를 포함하였습니다.

## ■ 본 안내서에서 법률 용어 및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 형사절차의 법적 근거는 각주로 표기하였습니다.
- 자주 언급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약칭 ‘발달장애인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법률용어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법절차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해 부록으로 “법률 용어 알기 쉬운 설명”을 포함하였습니다.
-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지원그림판”을 부록으로 포함하였습니다.

## ■ 본 안내서의 ‘도움을 주는 사람’, ‘보조인’, ‘신뢰관계인’의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도움을 주는 사람’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통칭한 용어입니다.
- ‘보조인’은 「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법원 등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신청과 허가 절차를 거쳐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보조인 이외에 「형사소송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신청과 허가 절차에 의해 재판과정에서 보조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신뢰관계인’이란 「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3항의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지원 및 의사소통지원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서 동석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7가지 원칙

## 1 어려운 단어보다는 쉬운 단어로 대화하기

평소 쓰임새	발달장애인과 대화
여기에 왜 왔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작성해 주세요	적어주세요. 써 주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요?	복지카드 좀 보여주세요.
싸인해 주세요	이름 적어주세요

## 2 중문이나 복문보다는 단문으로 대화하기

평소 쓰임새	발달장애인과 대화
아까 같이 왔던 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OOO씨가 원하는 것이 무엇 인지를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해주라'고 했어요.	아까 같이 왔던 분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OOO씨한테 뭘 원하는지 물어보래요. '뭐가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으면 해 줄게요.

## 3 한 문장에서 두가지 이상 묻지 않기

평소 쓰임새	발달장애인과 대화
그렇게 쓰시면 안돼요. 크게 붙여서 쓰세요.	글씨를 크게 쓰세요. 글씨를 붙여서 쓰세요.

## 4 이중부정이나 애매한 표현 하지 않기

평소 쓰임새	발달장애인과 대화
그거하지 마세요. 분량을 적당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시범을 보이며) 5줄 적어 주세요.

## 5 말을 천천히 하기

## 6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짧고 명료하게 대화하기

## 7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기





# 연구배경

## 연구 필요성

- 발달장애인이 성추행이나 절도 등의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고 의사소통과 표현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 이러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 및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에게 조력 받을 권리와 형사사법기관의 조력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는 이러한 권리에 관계된 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sup>1)</sup>
- 그럼에도 형사사법절차상 발달장애인을 위한 조력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이러한 조력이 왜 필요한지를 알리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형사절차상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나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 2022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지적장애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이 피고인인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거나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수사가 진행된 인권침해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 이에, 형사사법절차상의 관계자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조력자에게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의미와 이해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 연구개발과정에서 형사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법률용어·형사절차상 대처방안·수사지침 등이 함께 개발되어야 함을 인식하였으나, 연구기간이나 인력 등의 한계로 후속연구과제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 본 안내서가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 보호자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조력하는 사회복지기관, 형사사법기관 등에서 널리 활용되어 형사사법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의 토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 및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인 경우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조력의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발달장애인법」 제3조 제2항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발달장애인법」 제10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연구 목적

- 발달장애 피의자·피고인과 조력자가 형사사법절차를 이해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보호자나 관련 기관 종사자가 발달장애인의 교육, 조력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형사사법절차의 관계자들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 연구 방법

- 관련 법령 및 관련 문헌 등의 문헌 연구
- 법률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검토와 자문

## 기대 효과

- 형사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의 실질적 보장
-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증진과 자기결정권 보장
- 사회적 약자의 형사사법절차 권리보장을 통한 형사사법정의 실현
- 장애인 권리보장을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 활용 방안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안내, 교육자료
- 보호자 및 관계기관 종사자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안내, 교육자료
-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등 교육자료
-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발달장애인 대상 준법 교육자료
- 경찰 및 검찰 수사, 재판 관계자 대상의 장애인 인권 교육자료 및 수사·재판 참고자료



1단계

# 경찰 수사단계

1-1①단계

## 경찰서 출석요구 및 임의동행

### ☞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알아야 할 사항

#### ☑ 일반론

- 경찰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뉘볼 수 있고, 임의수사는 피의자 출석요구 또는 임의동행이 있을 수 있음<sup>2)</sup>
- 출석요구는 전화 또는 문자, 출석요구서로 이뤄지며 최근에는 주로 전화를 이용함
- 범죄 현장에서 범죄현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피의자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출석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임의동행을 요구하기도 함. 간혹 발달장애인이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불심검문에 의해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sup>3)</sup>

#### ☑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 보호자 등 도움을 주는 사람은 담당 경찰에게 본인과 발달장애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음
- 출석이 요구되는 사건의 사건번호, 사건 요지, 출석장소 및 일시 등을 안내받고, 이런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면 출석이 요구되는 사유가 사건관계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인지, 피의자 출석요구인지, 고소장 접수에 따른 피고소인 자격의 출석요구인지 등을 확인해야 함
- 필요시 서면에 의한 출석요구서 요청

#### ☑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거나, 임의동행이 되었을 때

- 경찰은 지체 없이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사건 요지 및 임의동행 사유, 동행 장소, 진술을 거부할 권리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의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게 되어있음

2) 「형사소송법」 제200조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 거동수상으로 인한 임의동행인 경우, 경찰은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소속, 성명, 그 목적과 사유, 동행 장소를 고지하거나 본인이 그들과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있음
- 임의동행은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혐의자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임의동행 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경찰서에서 퇴거할 수 있으며, 경찰은 피혐의자를 6시간을 초과하여 머물게 할 수 없음.<sup>4)</sup> 또한 경찰은 임의동행을 요구할 시 동행거부권,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게 되어있음<sup>5)</sup>
- 하지만 경찰조사에 무조건 비협조적이기 보다 발달장애인임을 알리고 발달장애인에게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시킨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출석 전 준비사항

- 피의자로 출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등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석을 신청할 수 있음<sup>6)</sup>
- 담당 경찰에게 필요한 서류(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를 제출함
- 관할 경찰서에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 지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전담경찰관에 의한 조사를 요청해야만 함<sup>7)</sup>
- 고소장 접수에 의한 조사인 경우, 고소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음
- 출석 시에는 일반적으로 피의자 및 도움을 주는 사람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진단서, 도장, 경찰이 요구한 자료, 기타 범죄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본)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관련된 사건이 중한 범죄사건(3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선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경찰조사 등 수사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선 변호인 선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

6) 「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2항~제4항

7) 「발달장애인법」 제13조

단, 경찰조사 등 수사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 및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 사선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17개 시·도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1522-288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을 통해 상담함<sup>8)</sup>

## 경찰을 위한 안내

### ✓ 출석요구 시

-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발달장애 등이 의심될 경우, 피의자가 전화로 '알았다'고 응답하더라도 반드시 출석요구서를 발송함
- 보호자 등이 연락을 하고 발달장애인임을 알리면 수사단계에서의 장애인 지원을 고지하고 절차를 안내함<sup>9)</sup>
-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을 배정하고, 전담경찰관에 의한 조사를 준비해야 함

### ✓ 임의동행 시

- 발달장애가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발달장애인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에게 보호자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연락함
-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등에게 임의동행 사유, 임의동행 시 고지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권리와 절차를 고지함
- 피의자 및 보호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임의동행하며, 동의 시에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 변명의 기회 등의 권리를 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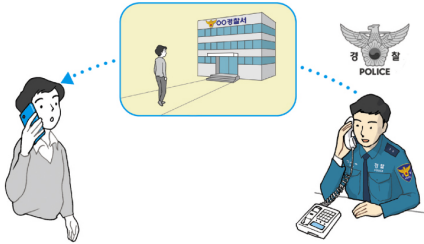
#### ◆ 미란다 원칙 고지 예시문

○○씨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의 질문에 원하지 않을 경우 대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 사건에 대해 옳고 그름을 직접 설명하거나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8) 「발달장애인법」 제33조, 제34조

9) 「발달장애인법」 제1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경찰조사 받으러 가기 ① **경찰서에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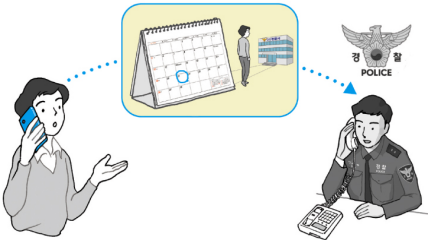


경찰이 나에게  
경찰서로 나오라고  
전화나 편지로  
알려줍니다.



내가 경찰서에 가는 것에 대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가족, 보호자 등



경찰서에 가는 날짜를  
경찰에게 전화로 약속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과 함께  
경찰서에 갑니다.

경찰조사 받으러 가기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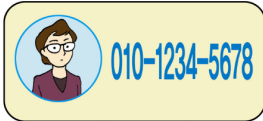
경찰이 같이 가자고 합니다



경찰관이 나에게  
경찰서에 함께 가자고 합니다.



내가 경찰관에게  
복지카드를 보여주며  
나는 발달장애인이라고 알려줍니다.



경찰관에게  
나를 도와줄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전화통화 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과 함께  
경찰서에 갑니다.

## 1-1②단계

## 체포와 유치장 수감

##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알아야 할 사항

## ☑ 일반론

- 경찰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현행법,<sup>10)</sup> 긴급체포,<sup>11)</sup> 영장에 의한 체포<sup>12)</sup>에 의해 강제수사가 가능함
- 체포는 유치장 수감을 전제한 것이므로 수감상태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함.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귀가 조치 되지 않는다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이 경우 최장 10일까지 유치장에 수감되어 조사받을 수 있음
- 체포 시 발달장애인이 겁을 먹거나 불안감에 도전적 행동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을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함

## ☑ 체포되었다고 연락을 받은 경우

- 경찰은 체포 후 24시간 이내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에게 피의사건명, 체포구속 일시와 장소,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함

## 10)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 ①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이라고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칭되고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고 하는 때

11)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체포의 필요성),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체포의 긴급성)(「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12)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전담경찰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요청함
- 체포된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임을 알리고,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함

## ☑ 유치장 수감

-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 유치장에는 48시간 이내까지만 수감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최장 10일까지 유치장에 수감될 수 있음
- 유치장 수감 시 특별한 규칙은 없으나 휴대폰, 현금, 담배 및 라이터 등의 개인물품은 소지할 수 없음
- 입감 전 경찰서에 소지품을 맡기게 되며, 가운을 입고 신체검사 등이 진행됨. 여성인 경우 여성 경찰관이 검사하거나 또는 성년인 여성의 입회하에 진행됨<sup>13)</sup>
- 수감자의 권리<sup>14)</sup>
  - 수감자는 변호인 및 비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이 보장됨
    - 경찰서에 방문하여 면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면회 가능함. 면회 시간은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공휴일 오전 9시 30분~오후 8시로 정해져 있음
    - 일반 면회는 1일 3회까지 허용되나 접견 내용은 녹음될 수 있음.<sup>15)</sup> 변호인의 경우 면회 횟수나 시간에 제한이 없고 내용의 비밀이 보장됨
  - 서신 수령 및 발송이 가능하며, 서류, 의류, 영치금, 상시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에는 복약지도서 또는 처방전을 포함하여 유치인 보호관에게 전달 가능함
  - 다만 안전, 보안 등의 사유로 금지되거나 사전 검사할 수 있음
  - 영치금 내에서 사식 가능
  -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불편하거나 어려운 것은 언제든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유치장 내에서 발생한 질병은 치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유치장 내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받음
- 구속영장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 청구될 수 있으며, 청구 이후 24시간 이내 구속전 피의자신문이 진행됨. 심사 결과는 통상 1일 이내 결정되며, 피의자 및 보호자 등에게 통지됨

13)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 「형사소송법」 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14)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별표3]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15) 전원재판부 2010헌마153, 2012.12.27.[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 취소]

## 경찰을 위한 안내

### ☑ 체포 시

- 체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자 등에게도 범죄요지, 체포사유 및 장소 등을 구두로 통지하고, 추후 서면으로도 통지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 피의자에게 체포 상황과 미란다 원칙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발달장애인 가족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찰서에 가면 보호자 등을 만날 수 있음을 설명하여 발달장애인이 겁을 먹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함
- 중대범죄자의 체포 및 도주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및 억제 등이 아닌 경우 경찰장구(수갑 등)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물리력은 필요최소한도로 사용되어야 함<sup>16)</sup>
- 발달장애인이 말 또는 행동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천천히 다시 말해줄 것을 요구함

### ☑ 유치장 수감 시

- 발달장애인이 안내문 또는 지시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간단하고 쉬운 단어 또는 몸짓을 이용하여 유치장 입감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지시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폭언, 욕설, 강압적인 어투, 반말, 장애를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표현,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16) 경찰장비 및 장구 등의 사용요건(「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 ◆ 발달장애인의 일반적 특징

- 상황에 대한 이해력·적응력·판단력의 부족
  - 언어를 비롯한 표현력·수리 능력 부족
  - 의사소통의 어려움
  - 충동조절이나 욕구통제의 어려움
  - 무조건 '예'라고 답하는 등 타인에게 쉽게 의존하거나 동조하는 경향이 심함
  - 주의집중력이 낮으며, 집중력이 급속하게 저하됨
  - 기억력과 학습능력이 낮음
  - 사회적 규범·규칙·지시 등을 이해하거나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음
  - 때로는 타인의 말을 따라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말을 하기도 함
- ※ 발달장애인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으며, 경계급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멸시, 괴롭힘의 대상이 된 경험들이 많기에 장애가 있음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기도 함.

#### ◆ 발달장애인의 확인

- 장애인등록증 상 '지적장애' 또는 '발달장애'로 명기된 경우
-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나 시군구 사회복지과 문의 또는 조회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아니어도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신뢰 관계인 동석이 요구되므로 발달장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sup>17)</sup>.
  - ① 읽고 쓰기 능력 테스트, 시간 및 공간개념 확인, 이해력, 적응력, 집중력 등으로 판단
  - ② 가족 및 보호자에게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심리상담결과 기록지 및 진단서 제출 요구
  - ③ 거주지 주민복지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④ 발달장애인에게 다녔던 학교·시설 등을 물어보고, 해당 기관의 교사 및 사회복지사 등에게 확인

1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보호대상은 제2조(장애와 장애인)에 근거하여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 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을 전제로 하지 않음.

경찰조사 받으러 가기 ③

경찰이 나를 체포합니다 -1



경찰관이 나를 붙잡아 가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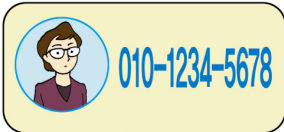
경찰관이 나에게 체포영장을 보여주고 나를 잡아가지도 합니다.



경찰이 나에게 말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내가 경찰관에게 복지카드를 보여주며 나는 발달장애인이라고 알려줍니다.



경찰관에게 나를 도와줄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통화 하라고 말합니다.



### 경찰조사 받으러 가기 ③ 경찰이 나를 체포합니다 -2



경찰에 체포되면, 경찰서로 가서,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경찰이  
내 몸과 내 물건들을  
검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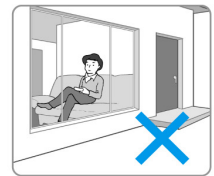
경찰이  
옷을 벗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내 물건들을 보관합니다.  
- 핸드폰, 돈  
- 담배, 라이터, 칼



다시 내 옷을 입고  
유치장에 갇힙니다.



유치장에 있는 동안  
집에 갈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 받기** ▶ 유치장에 있으면서 경찰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이  
유치장에 있는 나를 불러내어  
조사를 합니다.



경찰조사는  
여러번 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는 동안  
나는 계속 유치장에 있어야 합니다.

**유치장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경찰에게 말합니다**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경찰에게 말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가족, 변호인과  
만날 수 있습니다.

1-2단계

## 경찰 조사

### ☞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알아야 할 사항

#### ☑ 일반론

- 경찰은 신문에 앞서 피의자 및 신뢰관계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피의자와 신뢰관계인이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 경찰은 인정신문단계에서 피의자의 장애유무를 질문하거나 확인하며,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편의내용을 고지하고 동석 여부를 확인하게 됨

#### ☑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의 역할

- 조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정서적·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을 지원함. 발달장애인이 경찰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경찰에게 쉬운 말로 전달하거나, 반대로 경찰에게 발달장애인의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을 전달함
- 발달장애인 스스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며, 답변을 재촉하거나 대신하지 않아야 함

#### ☑ 진술영상녹화제도

-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비문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자가 영상녹화조사를 요청한 사건의 경우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필요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열람·등사 청구를 할 수 있음<sup>18)</sup>

18)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12조

### ☑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

- 경찰의 질문과 피의자 답변이 모두 종료되면 신문조서의 내용이 진술한대로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 경찰,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은 발달장애인 피의자를 위해 신문조서 내용을 읽어줄 수 있음
- 답변한대로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통해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일일이 변경이 어려운 경우 피의자 의견과 상이하다는 것을 기재할 수도 있음
- 경찰이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에게 별도로 질문하고, 이에 따라 답변한 내용이 있다면 피의자 진술과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신문조서 확인이 끝나면 조사를 받은 피의자는 이의 없음을 자필로 기재하고, 간인하며, 신뢰관계인과 함께 기명날인함
- 필요시 신문조서는 조사 당일에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음<sup>19)</sup>

### ☑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항

-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 배당 요청
- 경찰 조사 시 신뢰관계인 등으로 동석
- 필요시 영상녹화조사 요청
- 어려운 질문을 쉬운 용어로 설명하여 이해 조력
- 조사과정 중 특이상황이 있는 경우 해당 상황을 조서에 남겨줄 것 요청
- 피의자가 힘들어하는 경우 휴식 요청
-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전, 피의자와 함께 조서 내용 확인 및 오기 수정 요청

1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및 「경찰수사규칙」 제87조

## 경찰을 위한 안내

### ✓ 발달장애인 피의자 권리 고지 및 지원

- 발달장애인 피의자가 위촉되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파악되어야 하므로 발달장애인 피의자가 정서적·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함
- 인정신문 시 발달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음.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더라도 어느 순간 주의력이 떨어지거나 특정 용어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가급적 동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sup>20)</sup>
- 조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피의자와 신뢰관계인 모두에게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하고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 피의자가 신뢰관계인을 지정하지 못하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1522-2882)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영상녹화조사

- 녹화 및 녹음 시에는 피의자 및 신뢰관계인에게 녹화 및 녹음 사실을 고지해야 함
-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비문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자가 영상녹화조사를 요청한 사건의 경우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영상 녹화조사를 실시하여야 함<sup>21)</sup>

20)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21)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8조

## ☑ 조사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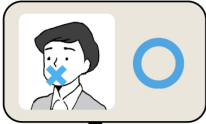
- 발달장애인 피의자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문받을 수 있어야 함
- 신문 전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인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발달장애 이외에 질환(예, 뇌전증)이 있는지, 복용 중인 약물은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응급상황을 대비함
- 신문에 앞서 조사에 참여하는 경찰 소개, 신문의 의미, 신문 진행방법과 원칙, 휴식 등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피의자와 의사소통이 어렵더라도 발달장애인 피의자를 향해 질문하고, 우선적으로 발달장애인 피의자의 답변에 집중함
- 답변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기다려주어야 하며, 표정, 몸짓 등의 비언어로 표현하기도 하므로 이를 잘 관찰하여 조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 긴장과 불안한 시간이 장시간 지속될 경우 주의집중력 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간마다, 피의자가 원할 경우 휴식 시간을 제공함
- 발달장애인 피의자가 신경과·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라도 심야조사는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수갑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질문자의 의도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런 특성을 고려해야 함  
예, 성관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실질은 피해자와 키스만 하였음에도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음
- 조사 후 발달장애인 및 신뢰관계자가 함께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신뢰관계인이 발달장애인에게 조사된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찰조사 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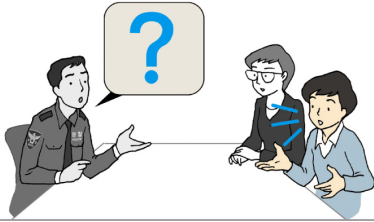
### 나를 도와줄 사람과 함께 경찰조사 받습니다 -1



경찰조사를 받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이  
대답하고 싶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줍니다.



경찰이 나에게  
물어보고  
나는  
대답합니다.



답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틀리면  
'아니요' 라고  
합니다.



맞으면  
'네' 라고  
답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한 내용이 쓰여있는  
**진술조서**를  
보여줍니다.

## 경찰조사 받기

### 나를 도와줄 사람과 함께 경찰조사 받습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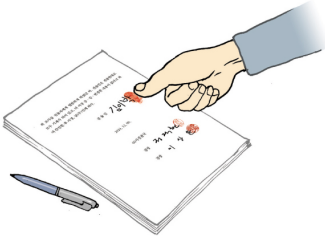
조사한 내용이 쓰여있는 진술조서에  
내가 했던 말이 맞게 쓰여 있는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확인합니다.



잘못 쓰여진 것이 있다면,

경찰관에게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진술조서에  
내 이름을 쓰고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으면,

경찰조사는 끝납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유치장에**  
감힐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가서**  
다시 조사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힘들면,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경찰조사 받을 때

힘들면,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 1-3단계

## 구속전 피의자심문과 구속적부심사

## ☞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알아야 할 사항

## ☑️ 구속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임
-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피의자 및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는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므로<sup>22)</sup> 이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 발달장애인 피의자와 변호인의 면담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진행 절차를 위해 법원에 미리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 피의자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어려움이 있으면 보조인력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sup>23)</sup>
-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절차는 계속되므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출석을 요구하면 성실히 응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음

## ☑️ 구속적부심사

-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sup>24)</sup>
- 이때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 함<sup>25)</sup>
- 신청권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임

22)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2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제8항

24)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25)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 ☑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항

- 구속전 피의자신문 및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으로서 의사소통 지원
- 발달장애인이 구속된 경우 변호인과의 의사소통이 더욱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피의자로서 방어를 충분히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희망한다는 점을 변호인에게 전달할 필요 있음
- 심사 전후 변호인과의 면담 시 의사소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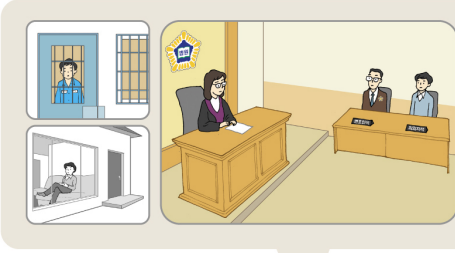
## ⋮ 영장전담법관을 위한 안내

### ☑ 발달장애인 피의자 신문 시 유의사항

-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가 장애인 관련자의 동석을 요구하면, 법원은 피의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보조 등을 위해 장애인 관련자의 동석을 허용함으로써 피의자가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sup>26)</sup>

2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제8항

**구속 전 피의자심문** 조사받는 동안, 감옥에 있을지 집에 있을지 판사가 결정합니다 -1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내가 조사를 받는 동안 내가 감옥에 있을지, 집에 있을지 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치장에 있다면, 경찰과 함께 법원에 갑니다.

내가 집에 있다면, 도와줄 사람과 함께 법원에 갑니다.



판사가 나에게 대답하기 싫으면, 답하지 않다고 된다고 알려줍니다.



이름  
나이  
주소  
직업

판사가 나에게 이름, 나이, 주소, 직업을 물어봅니다.



-  답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  틀리면 '아니요' 라고 합니다.
-  맞으면 '네' 라고 답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조사받는 동안, 감옥에 있을지 집에 있을지 판사가 결정합니다 -2




판사가 나에게 (범죄) 내용을 읽어주며 맞는지 물어봅니다.



-  답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  틀리면 '아니요' 라고 합니다.
-  맞으면 '네' 라고 답합니다.



변호인은 판사에게 내가 집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판사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 하라고 알려줍니다.



-  할 말이 없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  할 말이 있으면, 말합니다.



오늘 심문이 끝났습니다.  
결정은 다른 날짜에 알려줍니다.

돌아가서 기다립니다.

**구속 전 피의자신문** 조사받는 동안, 감옥에 있을지 집에 있을지 판사가 결정합니다 -3

판사가  
내가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면,



나는  
구치소에 감힙니다.



판사가  
내가 집에 가도  
된다고 결정하면,



나는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되면,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합니다.



**형사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안내



2단계

**검찰 수사단계**

2-1단계

## 형사조정제도

### ☞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알아야 할 사항

#### ☑ 일반론

- 형사사건에도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는 형사조정절차가 있으며, 이 절차 진행 시 발달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조인력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sup>27)</sup>
- 형사조정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형사조정에 참여할 수 있음<sup>28)</sup>

#### ☑ 형사조정제도

- 사기·횡령·배임, 절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폭행, 상해, 성폭력 등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sup>29)</sup>
-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성 있음
- 피해자와의 사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유용한 도구임
- 조정 성립 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취하장이나 합의서(또는 처벌불원서)가 작성되었다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각하) 결정되며,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 청구 등 검사 결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작용됨
-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가 진행됨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나, 쌍방이 형사조정예 동의하여야 형사조정 진행이 가능함(기소된 이후에는 불가능함)

2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제8항

28)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6조 제5항

29)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항

- 형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형사조정이 진행될 경우 조정기일에 형사조정위원 또는 조정장에게 신뢰관계인, 이해 관계인 등으로 동석 요청
- 조정 과정에서 피의자의 의사를 반영한 합의점 제안 등 조정 조력

### ☑ 형사조정위원을 위한 안내

### ☑ 조정 시 유의사항

- 발달장애인의 심리적·행동 발달적 특성에 맞게 조정 일시,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 등을 결정하여야 함
- 조정 절차에서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고 짧은 내용으로 질문하여야 함
- 조정 과정에서 조력인이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제안을 알기 쉬운 용어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함

## 형사조정제도

## 피해자와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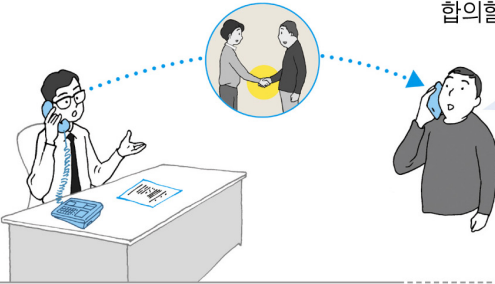


형사조정제도는  
물건이나 돈 문제, 명예훼손 사건 등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화해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면,

내가 **형사조정신청서**를 써서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검사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화해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있다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있다면,

약속한 날짜에  
다 같이 만나서  
서로 화해합니다.



## 2-2단계

## 검찰청 출석요구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알아야 할 사항

 일반론

- 출석요구는 전화 또는 문자, 출석요구서로 이뤄지며 최근에는 주로 전화를 이용함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 보호자 등 도움을 주는 사람은 담당 검사에게 본인과 발달장애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음
- 출석이 요구되는 사건의 사건번호, 사건 요지, 출석장소 및 일시 등을 안내받고, 이런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면 출석이 요구되는 사유가 사건관계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인지, 피의자 출석요구인지, 고소장 접수에 따른 피고소인 자격의 출석요구인지 등을 확인해야 함
- 필요시 서면에 의한 출석요구서 요청

 출석 전 준비사항

- 피의자로 출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등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석을 신청할 수 있음<sup>30)</sup>
- 담당 검사에게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함(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 관할 검찰청에 발달장애인전담검사 지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전담검사에 의한 조사를 요청해야만 함<sup>31)</sup>

30) 「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2항~제4항

31) 「발달장애인법」 제13조

- 출석 시에는 일반적으로 피의자 및 도움을 주는 사람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진단서, 도장, 검사가 요구한 자료, 기타 범죄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본)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관련된 사건이 중한 범죄사건(3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이 있는데, 검찰조사 등 수사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선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이 있음  
단, 검찰조사 등 수사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된 피의자신문을 받는 피의자 및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 사선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17개 시·도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1522-288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을 통해 상담함<sup>32)</sup>

## 검찰을 위한 안내

### ☑ 출석요구 시

-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발달장애 등이 의심될 경우, 피의자가 전화로 '알았다'고 응답하더라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발달장애가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발달장애인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에게 보호자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연락함
- 보호자 등이 연락을 하고 발달장애인임을 알리면 수사단계에서의 장애인 지원을 고지하고 절차를 안내함<sup>33)</sup>
- 발달장애인전담검사를 배정하고, 전담검사에 의한 조사를 준비해야 함

32) 「발달장애인법」 제33조, 제34조

33) 「발달장애인법」 제1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 2-3단계

## 검찰 조사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알아야 할 사항

 일반론

- 경미한 사건의 경우 추가 검찰 조사 없이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도 상당함
-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음<sup>34)</sup>
- 발달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조인력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sup>35)</sup>

 발달장애인전담검사제도

-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인 사건의 경우, 발달장애인전담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신문하게 하는 제도<sup>36)</sup>
- 발달장애인전담검사에게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별도 신청 절차없음)

 진술영상녹화제도

-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비문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자가 영상녹화조사를 요청한 사건의 경우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필요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열람·등사 청구를 할 수 있음<sup>37)</sup>

34)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3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제8항

36) 「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1항

37)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16조

### ☑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의 역할

- 조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정서적·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을 지원함. 발달장애인이 경찰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검사에게 쉬운 말로 전달하거나, 반대로 검사에게 발달장애인의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을 전달함
- 발달장애인 스스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며, 답변을 재촉하거나 대신하지 않아야 함

### ☑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

- 검사의 질문과 피의자 답변이 모두 종료되면 신문조서의 내용이 진술한대로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 검사, 실무관,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은 발달장애인 피의자를 위해 신문조서 내용을 읽어줄 수 있음
- 답변한대로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통해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 요청할 수 있으며, 일일이 변경이 어려운 경우 피의자 의견과 상이하다는 것을 기재할 수도 있음
- 검사가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에게 별도로 질문하고, 이에 따라 답변한 내용이 있다면 피의자 진술과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신문조서 확인이 끝나면 조사를 받은 피의자는 이의 없음을 자필로 기재하고, 간인하며, 신뢰관계인과 함께 기명날인함
- 필요시 신문조서는 조사 당일에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음<sup>38)</sup>

### ☑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항

- 발달장애인전담검사 배당 요청
- 검찰 조사 시 신뢰관계인 등으로 동석
- 필요시 영상녹화조사 요청
- 어려운 질문을 쉬운 용어로 설명하여 이해 조력
- 조사과정 중 특이상황이 있는 경우 해당 상황을 조서에 남겨줄 것 요청
- 피의자가 힘들어하는 경우 휴식 요청
-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전, 피의자와 함께 조서 내용 확인 및 오기 수정 요청

3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 검찰을 위한 안내

### ✓ 발달장애인 피의자 권리 고지 및 지원

- 발달장애인 피의자가 위촉되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파악되어야 하므로 발달장애인 피의자가 정서적·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함
- 인정신문 시 발달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음.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더라도 어느 순간 주의력이 떨어지거나 특정 용어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가급적 동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sup>39)</sup>
- 조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피의자와 신뢰관계인 모두에게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하고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 피의자가 신뢰관계인을 지정하지 못하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1522-2882)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조사 시 유의사항

- 발달장애인의 심리적·행동 발달적 특성에 맞게 조사 일시, 장소, 빈도,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함
- 수사 및 신문에 있어 보호자 등의 의사소통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sup>40)</sup>
-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비문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자가 영상녹화조사를 요청한 사건의 경우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여야 함<sup>41)</sup>
-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고 짧은 내용으로 질문하여야 함
- 신문은 최대한 짧게 진행하고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함

39)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4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제8항

41)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4조

- 답변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기다려주어야 하며, 표정, 몸짓 등의 비언어로 표현하기도 하므로 이를 잘 관찰하여 진술조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 질문자의 의도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런 특성을 고려해야 함  
예, 성관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실질은 피해자와 키스만 하였음에도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음
- 조사 후 발달장애인 및 신뢰관계인이 함께 진술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신뢰관계인이 발달장애인에게 조사된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함

**검찰조사** ▶ **검사가 나를 조사합니다 -1**



검사가  
경찰조사 내용을 읽어보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나를 조사합니다.



검사가 나에게  
조사받으러 오라고,  
전화나 편지로  
알려줍니다.



검찰조사를 받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조사를 받습니다.



검사가  
물어보면  
대답합니다.



답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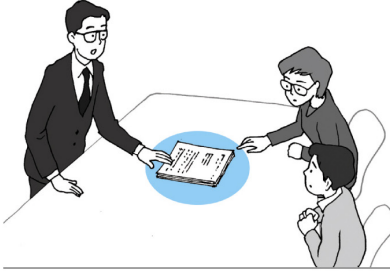
틀리면  
'아니요' 라고  
합니다.



맞으면  
'네' 라고  
답합니다.

## 검찰조사

## 검사가 나를 조사합니다 -2



조사가 끝나면,

조사한 내용이 쓰여있는  
**진술조서**를  
보여줍니다.



조사한 내용이 쓰여있는 진술조서에  
내가 했던 말이 맞게 쓰여 있는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확인합니다.



잘못 쓰여진 것이 있다면,

검사에게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진술조서에  
내 이름을 쓰고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으면,

검찰조사는 끝납니다.

※ 힘들면,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검찰조사 받을 때

힘들면,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2-4단계

## 과학수사

### ☞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알아야 할 사항

#### ☑ 진술분석

- 진술분석은 실제 경험한 사건에 대한 진술과 허위로 꾸며내거나 상상에 의한 진술 사이에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진술인의 진술이 진실한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임
-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성폭력 사건 또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데 주로 활용됨
- 특히 피해자가 아동 또는 지적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로 활용됨<sup>42)</sup>

#### ☑ 심리분석

- 심리분석은 다양한 심리학적 원리들을 적용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이며, 심리생리검사,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 통합심리분석 등이 있음
  - 심리생리검사: '거짓말탐지기 조사'라고도 불림. 심리생리분석기(폴리그래프 등)에 의하여 양심의 가책 및 탄로 우려 등 사람의 심리변화에 따른 혈압, 맥박, 호흡, 피부전류저항 및 뇌파변화 등을 측정·기록한 후 그 기록의 해석에 의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임<sup>43)</sup>
  - 임상심리평가: 다양한 심리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인지능력, 심리상태, 성격특성, 정신질환 여부, 재범 위험성 수준 등을 평가하는 심리분석 기법임<sup>44)</sup>
- 주로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활용됨
- 반드시 검사를 받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42) 「진술분석규정」 제8조 제1항

43) 「심리분석규정」 제18조

44) 「심리분석규정」 제35조

### ☑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항

- 조사 시 신뢰관계인이나 보조인과의 동석<sup>45)</sup>
- 어려운 질문을 쉬운 용어로 설명하여 이해 조력
- 조사과정 중 특이상황이 있는 경우 해당 상황을 기록해줄 것 요청
- 피의자가 힘들어하는 경우 휴식 요청

## ☰ 분석관을 위한 안내

### ☑ 발달장애인 피의자 권리 고지 및 지원

- 발달장애인 피의자가 위촉되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검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파악되어야 하므로 발달장애인 피의자가 정서적·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함
- 발달장애인의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음.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더라도 어느 순간 주의력이 떨어지거나 특정 용어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가급적 동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sup>46)</sup>
- 발달장애인 피의자가 신뢰관계인을 지정하지 못하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1522-2882)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심리분석 시 유의사항

- 발달장애인의 심리적·행동 발달적 특성에 맞게 조사 일시, 장소, 빈도,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함
- 보호자 등의 의사소통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sup>47)</sup>
-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고 짧은 내용으로 질문하여야 함

4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제8항, 「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4항

4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제8항, 「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4항

4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제8항

- 조사는 최대한 짧게 진행하고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함
- 답변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기다려주어야 하며, 표정, 몸짓 등의 비언어로 표현하기도 하므로 이를 잘 관찰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음
- 질문자의 의도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런 특성을 고려해야 함  
예, 성관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실질은 피해자와 키스만 하였음에도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음

## 2-5단계

## 검사 결정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알아야 할 사항

 검사 결정(처분) 종류

결정	내용
기소	정식 기소(구공판) / 약식 기소(구약식)
불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타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 송치, 성매매사건 송치, 기소중지, 참고인증지, 보완수사 요구 등

 조건부 기소유예

-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임
- 조건부 기소유예란, 피의자에게 선도, 교육, 상담, 치료 등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미함  
예, 발달장애인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죄의 경중에 따라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함
-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예, 교육 미이수), 기소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조건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 있음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절차

-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불복할 수 있으므로 결과를 잘 지켜봐야 함
  - 항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음

- 재항고: 고소인이 아닌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그 고소인이 아닌 자는 재항고할 수 있음
- 재정신청: 고소인이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고소인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음

## ⋮ 검찰을 위한 안내

### ☑ 발달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 시 유의사항

- 발달장애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따른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특히 초범의 경우 교육, 상담, 치료 등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함

## 검사의 결정

검사가 결정해서, 나에게 알려줍니다



검사가  
조사한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할 지  
결정합니다.



### 혐의없음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 기소유예

죄가 있지만  
벌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약식기소

벌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 정식기소

재판을 해서  
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결정한 내용이 적혀 있는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형사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안내



**3단계**

**재판단계**

3-1①단계

약식재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알아야 할 사항

☑ 약식명령

- 형사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서면심리)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
- 약식명령은 벌금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벌로 구성될 수 있음
-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정식재판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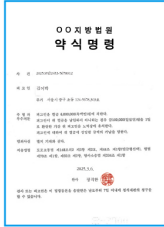
-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약식명령서 상의 벌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양형 주장을 할 수 있음. 단, 경우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액을 선고할 수도 있음
- 정식재판청구서는 피고인 본인 외에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제출할 수 있음
- 국선번호인 선정을 희망할 경우,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시 국선번호인 선정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정식재판청구서는 피고인이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됨

☑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항

- 약식명령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명령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조력
-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또는 사회봉사 신청 조력
- 정식재판청구 의사가 있는지 확인
-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 국선번호인 선정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약식재판**

**벌금(돈)을 내는 벌을 받습니다**



판사가 나에게 벌금을 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약식명령**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벌금을 내면 사건은 끝이 납니다.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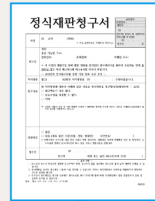
**정식재판 청구**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없거나 벌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판사에게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3-1②단계

## 정식재판-재판 받기 전

###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알아야 할 사항

#### ☑ 공소장 부분 송달 시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됨
- 첨부된 의견서를 반드시 7일 이내에 제출할 의무는 없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인 선임 후 의견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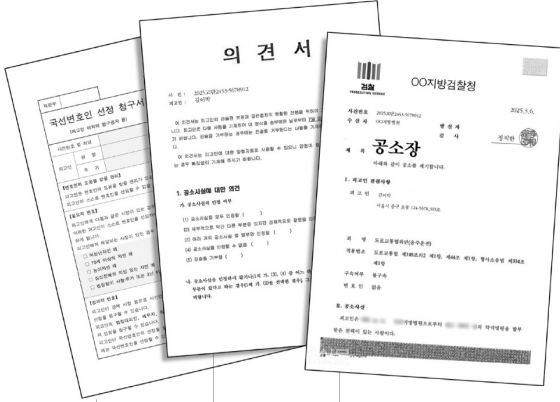
#### ☑ 국선변호인 제도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소장 부분과 함께 송달받았을 시 곧바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함
- 피고인 본인 외에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음
- 국선변호인 선정 후 사선변호인이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됨 (별도 신청 불요)

#### ☑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항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판기일변경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변호인과의 사전 면담 시 사건개요 설명 등 의사소통 지원
-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재판-1 재판에 필요한 서류가 우편으로 옵니다



재판에 필요한 서류들이  
우편으로 옵니다.



**공소장**

검사가 법원에  
나의 잘못을 재판해 달라고  
보낸 서류입니다.



**의견서**

공소장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변호인과 함께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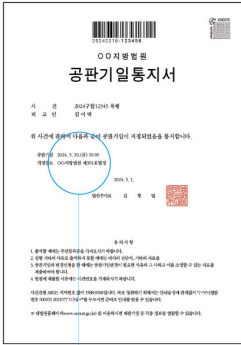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서**

국선변호사를  
신청하는 신청서 입니다.

국선변호인이 필요하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국선변호인:** 돈없이 나의 재판을 도와주라고 국가에서 보내주는 변호인

## 재판-2 재판하는 날짜/시간/장소를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공판기일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공판기일통지서에  
재판하는 날짜 / 시간 / 장소가  
나와있습니다.

공판기일통지서 재판하는 날짜, 시간, 장소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공판기일통지서에 나와있는  
날짜 / 시간 / 장소에  
갑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변호사, 보조인, 신뢰관계인

## 3-1②단계

## 정식재판-재판 진행 중

## ☞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알아야 할 사항

## ☑ 일반론

- 재판단계부터는 변호인이 주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신뢰관계인 등 도움을 주는 사람은 피고인이 재판과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 변호인에게 전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쉬운 용어로 전달하는 의사소통 지원을 해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을 심문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음<sup>48)</sup>
- 공소사실 및 모든 증거를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회 공판기일로 종결되어 선고기일을 지정함

## ☑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 장애가 있는 사람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지원 및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
- 소송절차에 원고·피고·피고인과 같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증인·감정인·통역인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모두 지원 가능함
-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등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인력, 휴식시간의 보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 보석 청구

-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 몇 가지 조건을 지키기로 약속하면서 석방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음<sup>49)</sup>

48)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

49) 「형사소송법」 제94조

-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성질, 피해자와 합의 여부,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함. 보석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금액의 돈 또는 담보 제공, 서약서 제출 등 출석을 보증하기 위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음

### ☑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항

- 변호인에게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 전달
- 피고인 심문 시 신뢰관계인으로서 의사소통 지원
- 재판 전후 변호인과의 면담 시 의사소통 지원

## ☺ 재판부를 위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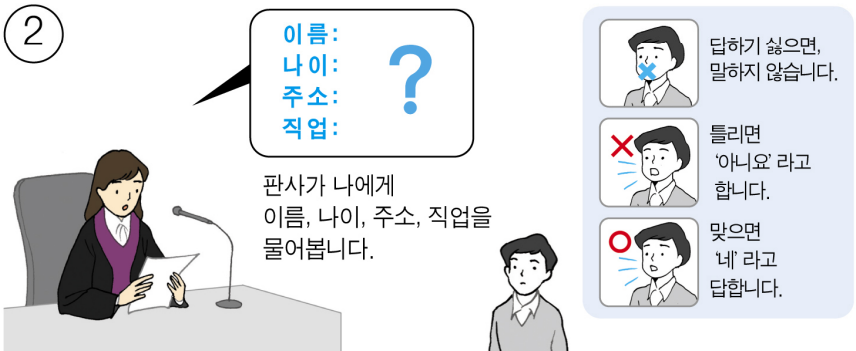
### ☑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법절차에서 지원이 필요한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예, 뚜렛증후군, 학습장애에 따른 읽기장애

### ☑ 형사재판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

- 가능한 쉬운 용어로 재판절차를 설명·진행하여야 함  
특히,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짧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함
- 발달장애인의 진술이 그의 진정한 의사인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을 심문할 때에는 신뢰관계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발달장애인을 심문할 때에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며 초점 질문이나 암시형 질문을 피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 그림 또는 인형 등 적절한 보조기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재판-3 재판하는 날, 재판 순서



3



검사가 판사에게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재판을 받는지  
말합니다.



4



판사가 나에게  
검사가 말한 내용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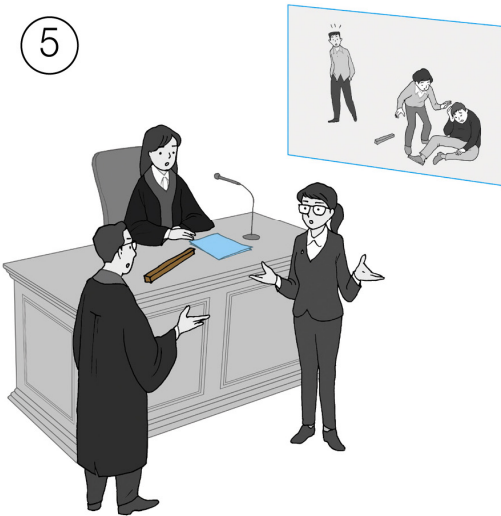


답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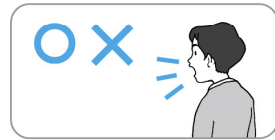
틀리면  
'아니요' 라고  
합니다.

맞으면  
'네' 라고  
답합니다.

5



판사, 검사, 변호인이 같이  
내가 죄를 지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사진 / 물건 / 서류)를  
함께 봅니다.



함께 본 증거가  
맞는지, 틀린지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6



검사



변호인



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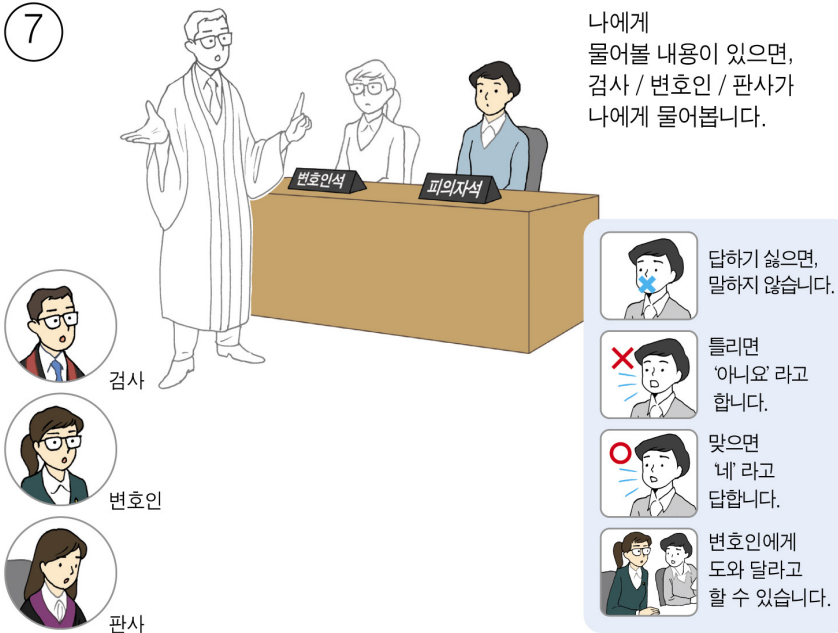


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말해줄 사람(증인)을 불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검사 / 변호인 / 판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변호인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7



검사



변호인



판사

나에게  
물어볼 내용이 있으면,  
검사 / 변호인 / 판사가  
나에게 물어봅니다.



답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틀리면  
'아니오' 라고  
합니다.



맞으면  
'네' 라고  
답합니다.



변호인에게  
도와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검사가 판사에게  
나에게 벌을 주라고  
말합니다.



9



판사가 변호인과 나에게  
마지막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변호인이  
마지막 설명을 합니다.

나도  
마지막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10



판사가  
다음 재판 날짜 / 시간 / 장소를 알려줍니다.

11



오늘 재판은 끝났습니다.

재판은 여러번 할 수 있습니다.

## 3-2단계

## 판결선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알아야 할 사항

 일반론

- 선고기일에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출석의무 없음)
- 법정구속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선고와 동시에 구속될 수 있음.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정구속을 미루는 결정을 하기도 함

 판결의 유형<sup>50)</sup>

- 선고유예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해야 할 경우에 그 선고를 미루어 두었다가 2년이 경과하면 형 자체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함
- 집행유예
  - 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됨
  -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감명령을 부가할 수 있음

50) 판결은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발달장애인에게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유형만 기술하였음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감명령
  - 피고인을 교도소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감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
  - 위 명령을 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명령을 이행하여야 함. 만약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

### ☑ 벌금 납부와 노역장 유치

-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함. 벌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 등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이 가능함
- 벌금을 미납하게 되면 독촉장이 고지되고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음. 지명수배자로 검거되면 구금되어 벌금을 납부해야만 석방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노역장에 유치됨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제도가 있음

### ☑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 1심 판결에 대하여 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함
-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항소장 또는 상고장은 각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함<sup>51)</sup>
-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 피고인 모두 항소장 또는 상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됨
- 구속 피고인의 경우, 구치소의 담당자에게 항소장 또는 상소장을 제출하면 됨

51) 「형사소송법」 제358조 및 제359조

### ☑ 형사보상청구

- 국가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예,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출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sup>52)</sup>
-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함

### ☑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항

- 선고기일 동석 시, 선고 결과를 쉬운 용어로 설명하여 전달
-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조력
-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 확인 및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제출
- 무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형사보상청구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재판부를 위한 안내

### ☑ 선고기일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

-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판결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선고기일에도 피고인이 판결내용을 정확하게 전달받기 위해 보조인, 장애인 관련자 등을 대동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sup>53)</sup>
- 선고 시 주문과 판결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함. 특히 판결의 주문과 불복 방법에 관하여는 발달장애인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줄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정구속을 미루는 결정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법정구속을 해야 하는 경우, 구치소에 수감될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편의제공에 관한 안내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문 등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52) 「헌법」 제28조, 「형사보상법」 제2조

5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항 및 제26조 제4항, 제6항

## 재판-4 판사가 결정한 내용을 나에게 알려주면 재판은 끝납니다



### 선고재판은

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있다면 어떤 벌을 줄지  
판사가 결정한 내용을  
알려주는 재판입니다.



선고재판에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선고재판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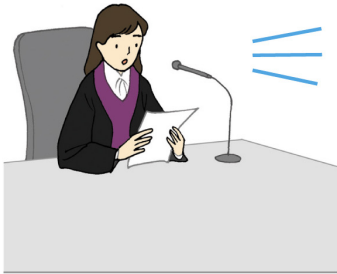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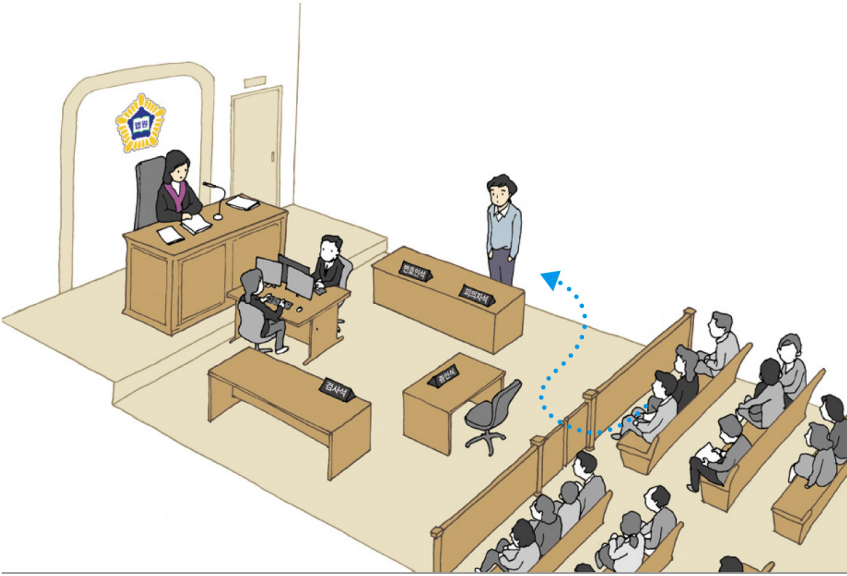
방청석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판사가  
사건번호와 내 이름을 부르면,

“네” 라고 답하고  
피고인석으로 갑니다.





판사가  
결정한 내용을 말하면  
재판은 끝납니다.



판사의 결정에 따라,  
법정에서  
곧바로 감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 항소 다시 재판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사의 선고 내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더 큰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항소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법정에서 하면 안되는 일



법정에서  
큰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됩니다.



법정에서  
싸움을 하면  
안됩니다.



법정에서 쫓겨나가거나,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4단계

# 형집행단계

4-1단계

## 교정·구금시설 이용<sup>54)</sup>

### ☞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알아야 할 사항

#### ☑ 일반론

- 교정시설은 수형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수형자는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sup>55)</sup>
  -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함

#### ☑ 분류심사

- 교정시설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는 분류심사를 함
  - 어느 교도소로 갈지 분류하는 경우나 치료, 보호감호 처분에 따라 해당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분류심사를 함
-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음
  - 판결이 확정되면 어느 교도소로 갈지 분류하는 심사를 받거나 치료나 보호감호 처분에 따라 해당 시설로 이동하게 됨

#### ☑ 교정시설의 입소 및 생활

- 교정시설에 입소하면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검진 및 목욕, 생활용품 지급, 수용시설 안내 후 지정거실 입실 등이 이루어짐. 지정거실은 중증의 발달장애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 여러 명(5~6명)의 일반 수형자가 함께 이용하는 혼거실에 배정됨

54) 교정·구금시설은 죄 지은 사람을 가두는 감옥을 의미하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도소를 지칭함. 교도소에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함. 형집행법에는 수형자 외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를 포함하는 '수용자'도 있지만 여기서는 수형자로 통일함.

5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인권의 존중) 및 제5조 (차별금지)

- 교정시설 내 생활은 일반적으로 오전 6시 기상, 취침은 오후 9시이며, 일과시간에는 운동, 노동(출역), 교육, 종교 및 특별활동, 각종 교정프로그램,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할 수 있음.
- 면회는 미결수는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1회, 기결수는 재소자의 등급에 따라 면회횟수가 정해져있으며, 면회 시 영치금 전달이 가능하고 영치금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구매할 수 있음
- 책자, 생필품 등이 반입이 가능하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의 사유로 검열될 수 있고 제한되는 품목이 있음
- 편지의 수신·발신이 가능하며, 공중전화 이용이 가능한데, 등급별로 이용 횟수가 정해져있음

### ☑ 출소와 가석방

- 형기가 종료되거나 가석방, 사면, 형집행정지가 되거나 집행유예, 소년부송치 등의 경우 출소가 이루어짐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중 무죄가 인정되거나 무혐의 판단이 나온 경우에도 출소가 이루어짐
- 수형생활이 양호하고 수형기간의 3분의 1이상 지난 경우 수형자는 가석방될 수 있음
  - 교정시설은 수형자의 죄명 등을 확인하고 교정시설 내에서의 관찰기록을 검토하여 분류처우위원회와 가석방 예비회의를 거쳐 가석방 대상자를 법무부에 보고
  - 법무부에서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교정기관으로 보내면 교정기관에서는 이를 해당자와 가족에게 통보함

## ☰ 교정시설을 위한 안내

### ☑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도행정

- 발달장애인에게는 가능한 쉬운 말로 교정시설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주의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규칙과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함

- 안전과 관련해서는 쉬운 말과 그림 또는 사진이 있는 문서를 이용하여 자세히 알려주고 건강 이상에 관해 당사자가 치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반복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이밖에 교정시설에서는 분류처우, 특기활동, 교도작업, 귀휴, 교화활동, 사회견학, 학과교육, 인권보호, 직업훈련, 고충상담, 가족만남의 집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해야함
- 교정시설 내에서 동료 수형자에 의한 폭력, 갈취 등의 학대,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의 정서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함
- 교정시설에서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징벌 등을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신체적·정서적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함
- 교정시설은 장애인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수형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sup>56)</sup>
  -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고, 감염병이나 감염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장애정도와 건강을 고려하여 다른 수형자보다 식사를 더 제공하거나 운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형자로 하여금 목욕을 돕게 할 수 있고 목욕 횟수도 늘릴 수 있음

56) 「형집행법」 제39조(진료환경 등)

## 교정 · 구금시설 ▶ 교도소에서 생활하기



교도관이  
교도소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알려줍니다.



아프거나 힘들면,  
교도관에게 말합니다.

4-2단계

## 치료감호시설 이용(보안처분)

### ☞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알아야 할 사항

#### ☑ 일반론

- 치료감호는 심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병원 등의 치료시설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 재범 방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함
- 발달장애인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따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음
  - 치료감호가 선고되면 그 집행을 위해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되고 보호관찰관에 의한 치료명령(보호관찰 병행) 집행이 이루어짐
-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음
  - 상소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할 수 있음

#### ☑ 치료감호 전 정신감정

- 수사, 재판 전 과정에 있어서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전문의의 정신감정이 실시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치료감호 대상자는 1~2개월 정신감정 시설에 유치되어 정신감정을 받는 경우도 있음
  - 정신감정은 주치의 면담, 행동관찰, 각종 검사를 통해 실시되고 심리검사, 뇌파검사, 임상병리검사, 방사선검사 등의 의료검사가 실시됨
- 정신감정이 끝나면 감정 의사가 감정서를 작성하고 정신감정 진료심의에서 감정서를 검토한 후 정신감정을 의뢰한 기관에 정신감정서를 보냄
  - 감정비용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정신감정을 의뢰한 기관에서 부담함

### ☑ 치료감호시설 입소

-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하면 분류심사가 진행되는데, 분류심사에서는 과거병력 및 가족력, 정신상태, 심신장애의 정도 등을 정신의학적으로 검사 진단하고 입소자의 전과, 범죄동기, 죄질, 연령, 신체상태 등을 진단 분석함
  - 치료감호소 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소자의 성별, 범죄유형에 따라 분리 수용됨
  - 입소자가 시설 간 이송이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결정됨
- 질서 유지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면회, 편지의 수신·발신, 전화통화 등은 보장되며,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 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됨
-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기 곤란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외부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여 치료 받기를 원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음
- 발달장애인이거나 법정대리인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음

### ☑ 치료감호 종료

- 법원에서 선고된 형기와 무관하게 치료감호위원회가 퇴원시킬지 계속하여 입원시킬지를 2년마다 심의하여 결정함
  - 이 경우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음
- 발달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등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치료감호시설은 6개월마다 치료감호를 계속할지 중단할지 심사함
  - 치료감호시설은 치료감호 종료를 신청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진료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진료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심의 위원회에 송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를 심사함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가중료, 치료위탁의 결정이 내려지면 보호관찰이 시작되는데 이때 보호관찰기간은 3년임

## ☑ 보호관찰

- 치료감호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심사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보호관찰을 받게 됨
  - 보호관찰소는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여야 함
  - 이때 심리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진단하거나 감정한 사람은 같은 조 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여야 하며 이사를 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하면 강제로 구인될 수 있음

## ☑ 치료감호시설이 알아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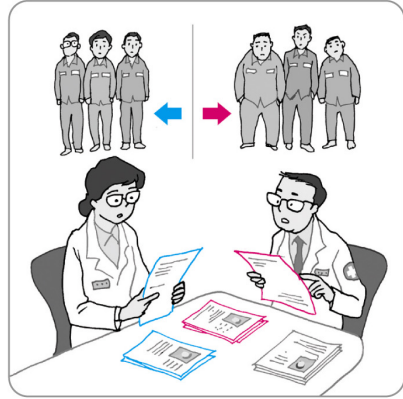
## ☑ 발달장애인 인권보장

- 치료감호시설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격리 또는 결박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음
-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이 모두 범죄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도전행동을 보일 때 과도한 신체적 구속이나 약물 투여는 신중해야 함
  - 특히 전문인력 부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과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하거나 동료들로부터 신체적 위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

## 치료감호시설 ▶ 치료감호시설에서 생활하기



감호시설의 직원이  
시설에서 지내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내가 어느 방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낼지,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형사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안내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김재왕, 김경양, 김진우, 나지영, 배광열, 백경량, 변어진, 송남영, 이지윤, 한상원, 홍석표(2024). 발달장애인·언어장애인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알기 쉬운 자료와 보완대체의사소통 개발 방안 연구. 법원행정처.
- 김지영, 황지태, 김강원, 정제형(2022). 지적장애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류기인, 정승원, 오현석, 차성안, 장현자, 김동현, 윤준석, 구나영, 권형관, 김선화, 이문희, 임성택, 김성연, 이문상, 김재왕, 이주연, 장영재(2020).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법원행정처.
- 신권철(2023).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적 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 에이블뉴스(2019. 7. 17.). 발달장애인의 사법 절차 유의점 알아보기.
- 조문순, 김강원, 김정환, 김지희, 최희정, 강완식, 이희정, 은종균, 윤삼호, 박미선, 고명균, 김진희, 김서윤(2015). 장애인 수사 매뉴얼. 경찰청 수사국 수사연구관실.
- 김진우, 이선경, 홍연표, 고명균, 송남영(2014).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매뉴얼: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 수사지원을 중심으로. 경찰청,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A large white circle is centered on a purple background. A teal ring is attached to the top of the circle, with a thin white line extending upwards from the ring. The Korean characters '부록' (Appendix) are written in bold black font in the center of the white circle.

# 부록

## 법률용어의 알기 쉬운 설명

### ☑ 사람

용어	알기쉬운 용어 설명
검사	법을 어긴 사람을 조사하고 벌을 주라고 판사에게 말하는 사람
경찰	법을 어긴 사람을 잡고 조사하는 사람
교도관	감옥에 간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고 잘 지내도록 돕는 사람
신뢰관계인	나를 도와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변호사	법을 잘 알아서 재판받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
진술조력인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경찰, 검사, 판사에게 말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판사	죄가 있는지 없는지 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사람
피의자	죄가 있을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
피해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다치거나 돈을 잃은 사람

### ☑ 조사

용어	알기쉬운 용어 설명
임의동행	내가 동의해서, 경찰이 나와 같이 경찰서에 가는 것
긴급체포	크게 잘못된 사람을 경찰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가는 것(김재왕 외, 2024)
진술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쓴 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경찰과 검사가 질문하고, 나의 답변을 쓴 글
진술거부권	경찰이나 판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
구속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기 위해 감옥에 가는 것
구속전 피의자신문 (구속영장실질심사)	감옥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받는지 판사가 결정하는 것
형사조정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화해하는 제도
합의	돈으로 보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의견을 모으는 것(김재왕 외, 2024)

### ☑️ 검사의 결정

용어	알기쉬운 용어 설명
혐의없음	죄가 없다는 결정
기소유예	죄는 있으나 벌을 주지 않겠다는 결정
약식기소	벌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결정
정식기소	재판을 해서 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결정
기소처분	법원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받아야 된다고 검사가 정한 것
불기소처분	법원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받지 않아도 된다고 검사가 정한 것

### ☑️ 판사의 결정

용어	알기쉬운 용어 설명
선고 재판	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있다면 어떤 벌을 줄지 결정하는 재판
선고 기일	선고 재판을 하는 날짜
선고유예	가벼운 죄가 있어, 앞으로 또 죄를 짓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것으로 해 주는 결정
집행유예	죄가 있으나 벌을 나중에 주는 결정
보호관찰	감옥에 가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공부해야 하는 것
사회봉사명령	가벼운 죄가 있어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벌
수감명령	가벼운 죄가 있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공부해야 하는 벌
약식명령	공판을 하지 않고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

### ☑️ 교정 생활

용어	알기쉬운 용어 설명
교정구금	죄 지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
치료감호	정신적인 문제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감옥에는 가지 않고 보호받으며 치료하게 하는 것

## 피해자보호·지원제도

###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알아야 할 사항

#### ☑ 형사절차상 지원

-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음<sup>57)</sup>
- 국선변호사 선정 등 소송 지원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범죄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친권상실·후견인 지정 청구 소송 등 지원
- 검찰청 직원 동행 또는 재판 모니터링 지원
  -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정 출석 및 귀가 시 검찰청 직원 동행 또는 재판 모니터링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사실 등을 통지
- 피해자의 의견진술
  - 피해자가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타 기관과의 연계지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치료비(5주 미만), 간병비, 심리상담 등 지원
  - 스마일센터(02-333-1295):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및 임시주거 등 제공
  -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서비스 제공

57)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1577-1701):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범죄 발생 초기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맞춤형·통합 지원을 제공

### ☑ 경제적 지원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 및 적법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범죄로 인해 (1)생명을 잃었을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유족구조금을, (2)다쳤을 경우에는 상해 정도에 따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을 각 지급받을 수 있음 (단, 과실범 제외)

### ☑ 심리치유 지원

- 범죄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리치료비, 심리상담 서비스지원 가능

### ☑ 신변보호 지원

- 범죄피해자나 특정범죄의 범죄신고자 및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에서 제공하는 이전비, 위치확인장치(스마트워치), 신고자 등 구조금, 피해자 보호시설(안전가옥), 가명조서 등 신변보호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 주거지원

- 범죄피해자는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받을 수 있음

☑ **유관기관 피해자보호·지원제도**

기관	지원제도	지원대상·내용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치료비(5주미만), 심리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등 경제적지원 및 법정동행 등 신변보호, 주거지원 등
	법률홍탁터	· 범죄피해자 법률적 문제 상담 · 법률서류 작성 지원 · 복지서비스 연계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제공
	스마일센터	·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심리치유 · 기존 주거 생활 곤란시 스마일센터 임시숙소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민·가사 등)	· 범죄피해자의 민·가사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경찰	신변보호	· 보복우려가 있는 경우 스마트위치(위치확인장치) 보호시설 연계, 신변경호, 맞춤형 순찰, 민간경호 지원 등
	임시숙소	· 보복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히 숙박업소 제공
	강력범죄 현장정리 제도	·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의 주거 등이 훼손되었거나 혈흔, 약취 등 오염이 발생한 경우 피해현장의 정리를 지원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 상담, 서비스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 개입 서비스 제공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	·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 수사지원 및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등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
	성폭력·가정 폭력상담소	· 피해 상담, 의료·법률 지원, 돌봄 비용 지원 등 여타 서비스 연계 · 주거(임대주택) 및 보호시설로의 연계지원 ·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실업급여 지원	· 취업지원, 실업급여 지원 · 직업상담, 직업교육 지원

기관	지원제도	지원대상·내용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지원, 심리치유 지원, 의료지원</li> <li>· 보호시설 연계, 이주비 지원</li> <li>· 민간경호 지원 등</li> </ul>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상담·지원</li> <li>·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심리, 통·번역 지원, 체류, 법률, 의료 상담 등 지원</li> <li>·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인도, 전문시설 연계 등 지원</li> </ul>
	서울 이주여성 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 등 위기 이주여성 대상 전문 상담, 의료·법률·심리상담 연계 등 사례관리, 긴급 보호 서비스 제공</li> <li>· 전문상담 서비스, 의료·법률지원, 다국어통번역지원단 운영, 긴급보호(단기)</li> </ul>
	서울디지털 성범죄안심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삭제지원, 변호사 선임, 법률·소송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li> </ul>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지원, 채무조정, 개인회생,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저리의 서민금융상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등 제공</li> <li>·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li> <li>·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지원)</li> <li>· 미소금융재단(사회적 취약계층 생계비, 학자금 대출 등)</li> </ul>
보건 복지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li> <li>·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li> <li>·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li> <li>·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li> <li>·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li> </ul>
	노인보호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학대 피해자 쉼터 일시보호, 전문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li> <li>· 노인 학대행위자(가족 등) 심리치료, 의료·복지·법률서비스 연계</li> </ul>
	긴급복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서비스, 주거비 등 지원하는 제도</li> </ul>

**피해자 지원**

나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청 직원과 함께 다닐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돈이 없이 변호사를 지원해 줍니다.  
재판을 도와줍니다.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내가 있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됩니다.

**피해자 지원** ▶ **나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받아서 마음이 힘들 때,  
의사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보호자가 죽었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줍니다.



가해자가 무서울 때,  
안전한 집에서 잠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피해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 비용을 줍니다.



병원비, 생활비, 교육비, 장례비 등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소통지원그림판

**계절** 어떤 계절인가요?



**날씨** 어떤 날씨인가요?



**시간** 언제 / 몇시 인가요?



06:00



09:00



12:00



03:00



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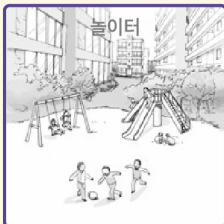


09:00



12:00

**장소** 어디인가요?



**물건** 어떤 물건인가요?



# 의사소통지원그림판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써 주세요.

신분증이 있습니까? 있으면 보여주세요.



집이나 부모님의 전화번호가 무엇입니까?  
아시면 번호를 써 주세요.



몇 살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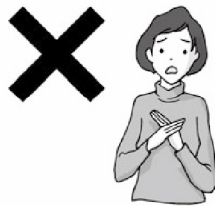


집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예



아니오



모릅니다



- 본 그림판은 지적장애인의 신분확인고 숫자, 한글, 시간, 장소 등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그림판을 사실관계(시간, 장소 등)를 특정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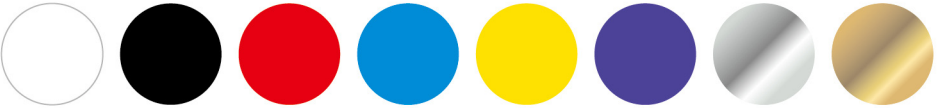
숫자 숫자를 읽어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33	35	99	100	1000	10000			

한글 한글을 읽어보세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감	배	의	자	책	상	버	스	지	하	철	아	버	지	어	머	니

색깔 색깔을 말해보세요.



금전 돈이 얼마인가요?




모두 얼마인가요?



+  =





**형사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안내

## 연구·집필진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책임 연구원	전동일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이인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고명균 (전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김영미 (사단법인 온을 변호사) 윤수정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 이대한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부장)
간 사	최영주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담당)
자 문 위 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장) 배광열 (사단법인 온을 변호사)

본 연구보고서는 2024년도 대검찰청 연구용역과제  
결과물로서 내용은 대검찰청의 공식 견해가 아님

## 형사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안내

인 쇄	2024. 12.
발 행	2024. 12.
발 행 처	대검찰청,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전 화	02-592-5023
전자우편	kaidd@daum.net
홈페이지	<a href="https://kaidd.or.kr">https://kaidd.or.kr</a>
I S S N	11-1280000-000401-01

[비매품]



# 형사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안내

